

8. 대구광역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 2020년 4월 9일
- 발 의 자 : 김재우 의원, 이영애 의원, 이시복 의원, 김지만 의원, 배지숙 의원, 이만규 의원, 이태손 의원, 장상수 의원, 전경원 의원
- 회부일자 : 2020년 4월 13일
- 상정일자 : 제274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20년 4월 23일) 수정안 가결

##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이시복 의원)

### □ 제안이유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추진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도시 지정 사업’ 선정 방향이 기초자치단체 위주로 추진됨에 따라,
- 향후 ‘문화도시 지정 사업’은 구·군 중심으로 추진하고 대구시는 이를 지원·조정하는 역할로 변경하여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1조~제2조)
- 문화도시 환경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문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대구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각 조항 삭제 (제6조~제14조)

## 3. 검토보고 요지(보고자 : 전문위원 김창업)

### □ 주요 검토사항

-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해석이나 집행 상저촉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3조는 문화도시 환경조성을 위해 지역의 문화적 특색을 살려 도시개발을 수행하고, 정책 수립 시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발굴·활용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 안 제4조에서는 문화도시 조성관련 사업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기존 조례 제4조 및 제6조부터 제14조까지는 대구시장의 종합계획 수립 및 대구시의 ‘문화도시위원회’와 ‘문화도시센터’의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삭제하였음.

## □ 검토결과

- ‘문화도시 지정 사업’은 「지역문화진흥법」 제정(2014. 1. 28.)으로 2018년부터 정부에서 문화적 기반과 역량을 갖춘 도시를 대상으로 2024년까지 총 30개 정도의 도시를 지정하여 지원 할 예정이었으며,

### [문화도시 조성사업 개요]

- 법정개념 : 지역별 고유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화도시로 지정된 도시
- 지정분야 : 역사전통, 예술, 문화산업, 사회문화, 지역자율(총 5개분야)
- 규 모 : 2024년까지 30개정도 선정(매년 10여개 도시 지정)
- 조성기간 : 2020 ~ 계속(최대 5년간 지원, 국비 50% 매칭)
- 지원내용 : 콘텐츠 개발 및 브랜드화, 사회적 경제 조직 육성 등

- 대구시는 2018년에 ‘1차 예비문화도시’로 지정되었으나 2019년 12월 문화도시 최종 지정에서 탈락하였고, ‘2차 예비문화도시’에는 12개 기초자치단체만 지정된 바 있음.

※ 1차 문화도시 지정 : 부산영도구, 서귀포시, 부천시, 원주시, 청주시, 천안시, 포항시,  
2차 예비 문화도시 지정 : 부평구, 오산시, 강릉시, 춘천시, 공주시, 완주군, 순천시,  
성주군, 통영시, 제주시, 남원시, 김해시

- 정부의 문화도시 지정 방향이 소규모의 특색 있는 고유 문화자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초자치단체 위주로 지정하려는 방침으로, 대구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제반규정을 구·군 문화도시 조성을 지원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됨.

- 그간 사업 준비 과정에서 얻어낸 성과와 노하우를 구·군의 ‘문화도시 지정 사업’에 효과적으로 연계시켜 지원하고, 지역문화의 다양성을 계승하며, 각 기초단체간 중복을 피하여 도시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대구시의 지원과 역할이 필요하겠음,
- 다만, 제출된 조례안에서 문화도시에 대한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고 구·군 단위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지정에 따른 제반 절차와 대구시의 지원 분야 등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겠음.

##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구·군 문화도시 지원에 대한 시의 역할이나 지원 방안이 미약해 보이며, 시장의 책무나 시와의 협의 사항 등을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있어 보임.	관련 조항을 추가로 규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

## 5. 토론요지

- 「대구광역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수정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할 것을 동의함.

## 6. 수정안 요지

- 조례명 「대구광역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를 「대구광역시 문화도시 조성 기본 조례」로 수정하고, 제1조 “대구광역시를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문화도시로 조성함으로써”를 “대구광역시 관할 구·군이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문화도시로 조성되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로 수정하였으며, 제2조(정의), 제5조(시장의 책무), 제6조(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수립 등), 제7조(문화도시 조성계획 협의) 조항을 신설하였음.

## 7.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재석의원 전원찬성)

##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10. 첨부서류

- 위원회 수정안 : [붙임1]

[붙임1] 위원회 수정안

## 대구광역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대구광역시문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조례명 「대구광역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를 「대구광역시 문화도시  
조성 기본 조례」로 수정하고, 제1조 “대구광역시를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문화도시로 조성함으로써” 를 “대구광역시 관할  
구군이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문화도시로 조성되도록 적극 지원  
함으로써” 로 수정하였으며, 제2조(정의), 제5조(시장의 책무), 제6조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수립 등), 제7조(문화도시 조성계획 협의) 조항을  
신설하고, “제2조”, “제3조”, “제4조” 를 “제3조”, “제4조”, “제8조” 로  
수정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전 부 개 정 안	수 정 안
<p>조례명 대구광역시 <u>문화도시조성</u>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를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문화도시로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행복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lt;신 설&gt;</p> <p>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3조(문화도시 환경조성)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도시계획 및 건축 등 도시개발을 수행할 경우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살리고, 정책 수립 시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발굴·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조례명 대구광역시 <u>문화도시조성 기본</u>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대구광역시 관할 구·군</u> 이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문화도시로 조성되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도시”란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2조제6호에 따른 문화도시를 말한다.</p> <p>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정안과 같음)</p> <p>제4조(문화도시 환경조성) (개정안과 같음)</p>

<신 설>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정을 계획하고 집행하면서 문화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전통과 현대가 공존할 수 있도록 시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의 문화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신 설>

제6조(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하는 구청장·군수는 해당 지역의 문화적·역사적 정체성, 창조성, 예술성 등 문화도시로서의 기초 여건을 토대로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지정 희망년도 2년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문화도시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도시 조성의 기본 방향
2. 문화도시 지정 분야별 특성화 계획
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4.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필요한 사항

<신 설>

제7조(문화도시 조성계획 협의)

①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하는 구청장·군수는 문화도시 지정 신청 전

제4조(문화도시의 조성지원)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인적·물적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2. 정부의 각종 정책과 연계한 지역 문화 특성화 사업의 발굴 및 지원사업.
3. 지역관광과 연계한 문화도시 홍보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사업
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 ② 시장은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 문화 다양성의 균형있는 조화를 기본 원칙으로 문화도시 조성계획 협의 신청에 대해 시의 각종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8조(문화도시 조성지원)

(개정안과 같음)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 대구광역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대구광역시 문화도시 조성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관할 구·군이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문화도시로 조성되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행복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도시”란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6호에 따른 문화도시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문화도시 환경조성)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도시계획 및 건축 등 도시개발을 수행할 경우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살리고, 정책 수립 시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발굴·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정을 계획하고 집행하면서 문화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전통과 현대가 공존할 수 있도록 시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의 문화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6조(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하는 구청장·군수는 해당 지역의 문화적·역사적 정체성, 창조성, 예술성 등 문화도시로서의 기초 여건을 토대로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지정 희망년도 2년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문화도시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도시 조성의 기본 방향
2. 문화도시 지정 분야별 특성화 계획
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4.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7조(문화도시 조성계획 협의)** ①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하는 구청장·군수는 문화도시 지정 신청 전 시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 문화 다양성의 균형있는 조화를 기본 원칙으로 문화도시 조성계획 협의 신청에 대해 시의 각종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8조(문화도시 조성지원)**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인적·물적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2. 정부의 각종 정책과 연계한 지역 문화 특성화 사업의 발굴 및 지원사업
3. 지역관광과 연계한 문화도시 홍보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사업
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